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8. 29.
4. 회부일자 : 2022. 9. 2.

II. 개정이유

- 2023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1개교(미양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휘경고등학교, 미양고등학교) 교명 변경
- 유치원 1개원(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학교 1개교(서울동호초등학교) 위치 정정

III. 주요내용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정정: 1개교

○ 서울동호초등학교

- 위치 정정: 성동구 동호로5길 133 → 성동구 매봉길 49-35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2)

변경: 1개교

- 미양중학교

- 교명 변경: 미양중학교 → 솔샘중학교

3.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3)

- 변경: 2개교

- 휘경공업고등학교

- 교명 변경: 휘경공업고등학교 →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

- 미양고등학교

- 교명 변경: 미양고등학교 → 솔샘고등학교

4.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정정: 1개원

-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위치 정정: 중랑구 봉우재6길 26 →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별첨 5]

-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협의완료

4. 기타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나. 입법예고(2022. 7. 21. ~ 2022. 8. 10.) 결과: 의견없음 (별첨7)

- 다. 교육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별첨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별첨 5)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호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1개교(미양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휘경공업고등학교, 미양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 유치원 1개원(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1개교(서울동호초등학교)의 위치 정정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검토

- 먼저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의 건은 현 교명의 부정적 어감을¹⁾ 해소하고 교명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명칭을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에서 슬샘중학교 및 슬샘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의 교명을 슬샘중학교 및 슬샘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 바²⁾, 교명 변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 교명(미양)이 성적 등급 “미”와 “양”의 부정적 이미지 연상

2)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

[표-1] 교명 변경 절차

| 검토내용 | 미양중학교 | 미양고등학교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2. 4. 6. | 22. 4. 1. |
| 이해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 22. 9. 2. - 9. 6. | 22. 9. 2. - 9. 6. |
| 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 22. 5. 2. | 해당없음 |
| 본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 | 22. 5. 25. | 22. 5. 25. |
| 입법예고 | 22. 7. 21. - 8. 10. | |

○ 다만 지난 2022년 3월에 실시된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의 학교 이해관계자 대상 교명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들의 찬성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바,

미양중학교는 재학생 437명 중 의견을 제출한 395명의 27.1%(107명)만이 교명 변경에 찬성하였고, 미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513명 중 의견을 제출한 439명의 47.8%(210명)만이 교명 변경에 찬성한 상황입니다.

[표-2] 미양중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학교구성원 1차 의견 조사 결과

| 구분 | 대상인원 | 의견 제출인원 | 찬성 | | 반대 | | 비고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 재학생 | 437 | 395 | 107 | 27.1 | 288 | 72.7 | |
| 학부모 | 437 | 179 | 135 | 75.4 | 44 | 24.6 | |
| 교직원 | 46 | 36 | 30 | 83.3 | 6 | 16.7 | |
| 졸업생(동문회) | - | - | - | - | - | - | 없음 |
| 계 | 920 | 610 | 272 | 44.6 | 338 | 55.4 | |

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표-3] 미양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학교구성원 의견 조사 결과

| 구분 | 대상인원 | 의견 제출인원 | 찬성 | | 반대 | | 비고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 재학생 | 513 | 439 | 210 | 47.8 | 229 | 52.2 | |
| 학부모 | 513 | 92 | 76 | 82.6 | 16 | 17.4 | |
| 교직원 | 60 | 59 | 51 | 86.4 | 7 | 11.9 | 기권1 |
| 졸업생(동문회) | - | - | - | - | - | - | 없음 |
| 계 | 1,086 | 590 | 337 | 57.1 | 252 | 42.7 | |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2022.8.29.) 이후 급히, 재조사(9월2일~9월5일)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미양중학교 재학생 437명 중 의견을 제출한 420명의 83.6%(351명)가 교명 변경에 찬성하였고³⁾, 미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511명 중 의견을 제출한 475명의 73.1%(347명)⁴⁾가 교명 변경에 찬성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미양중학교 및 미양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동의 여부는 재 조사에서 찬성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이 동일하고 변경될 교명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만에 찬성비율

3) 미양중학교 교명변경 동의여부 재조사 결과

| 구분 | 대상인원 | 의견 제출인원 | 찬성 | | 반대 | | 비고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 재학생 | 437 | 420 | 351 | 83.6 | 69 | 16.4 | |
| 학부모 | 437 | 354 | 305 | 86.2 | 49 | 13.8 | |
| 교직원 | 59 | 58 | 58 | 100 | 0 | 0 | |
| 졸업생(동문회) | - | - | - | - | - | - | 없음 |
| 계 | 933 | 832 | 714 | 85.8 | 118 | 14.2 | |

4) 미양고등학교 교명변경 동의여부 재조사 결과

| 구분 | 대상 인원 | 의견 제출인원 | 찬성 | | 반대 | | 비고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 재학생 | 511 | 475 | 347 | 73.1 | 128 | 26.9 | |
| 학부모 | 511 | 80 | 69 | 86.3 | 11 | 13.8 | |
| 교직원 | 71 | 69 | 68 | 98.6 | 1 | 1.4 | |
| 졸업생(동문회) | | | | | | | 없음 |
| 계 | 1,093 | 624 | 484 | 77.6 | 140 | 22.4 | |

이 56.5%(미양중학교), 25.3%(미양고등학교)나 증가된 것은 의문
인바, 설문 절차 및 설문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에 대한 서울시교
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휘경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의 건은 휘경공업고가 성수공
업고와 통합되고⁵⁾, 교육부의 ‘2020 서울·아세안 중등직업교육 협
력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교명을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서울국제과
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휘경공업고는 교명 변경을 위해 학교 구성원 및 동문
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설문 참여 인원의
99%가 교명 변경에 찬성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표-4] 교명 변경에 대한 학교구성원 및 동문회 의견 조사 결과

| 구분 | 대상인원 | 의견 제출인원 | 찬성 | | 반대 |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재학생 | 209 | 170 | 168 | 99 | 2 | 1 |
| 학부모 | 209 | 170 | 168 | 99 | 2 | 1 |
| 교직원 | 83 | 83 | 83 | 100 | 0 | 0 |
| 졸업생(동문회) | 89 | 89 | 89 | 100 | 0 | 0 |
| 계 | 590 | 512 | 508 | 99 | 4 | 1 |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회 교명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국제과학기술고
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변경될 교명이 타 학교
(국제고등학교,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와 명칭이 유사하고 특성화
고의 전공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명 변경의 건을

5) 2024년 3월 통합예정(성수공업고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중단)임. 성수공업고와 휘경공업고는
공업계 학교로서 학과 특성이 유사하고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통합이후 성수공업고는 기존 실습실,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진로·직업 거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며 휘경공업고는 국제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임.

부결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2022년 6월 22일), 제1회 심의위원회의 부결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나⁶⁾ 학교 구성원들의 높은 동의율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변경 의지를 반영하여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휘경공업고의 교명 변경전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타 학교와의 차별성 해소, 특성화고의 특성 미반영 등 1차 심의위원회 부결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⁷⁾ 교명 변경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심의시 교육청의 부실한 설명 또는 위원간 봐주기식의 안이한 심의가 원인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심의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신입생 지원율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국제” “과학기술” 등 명칭을 차용하여 학교명을 변경하여 신입생 지원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단순히 이미지 개선만으로 신입생 지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낮고 특성화고의 위기가 갖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적 조치에 머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특성화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방향 설정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학교(특성화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교명 필요

7)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참조.

[표-5] 교명 변경 절차 및 심의 결과

| 구분 | 기간 | 결과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3. 16. | 가결 |
| 이해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 3.8.-3.14. | 찬성율 81% |
| 교육지원청 교명제정 자문위원회 | 해당없음 | - |
| 본청 교명제정 심의위원회 | (1차) 5. 25. | 부결 |
| | (2차) 6. 22. | 가결 |
| 입법예고 | 7. 21. - 8. 10. (별도의견 없음) | |

- 결론적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위원회로서⁸⁾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전문지식 도입, 행정기관 간 의사의 종합, 협의,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학교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위치 정비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위치 정비의 건은 총 2개교(서울동호초등학교, 서울중랑초등학교별설유치원)로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 신설 당시 잘못 기재된 주소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먼저, 서울동호초등학교 위치 정비의 건은 서울동호초등학교의 정문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성동구 동호로5길 133에서 성동구 매봉길 49-35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이 2021년 7월 1일인 것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청의 주소 정비 관련 업무 추진에 안일함을 방증한다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6] 서울동호초등학교 도로명주소 변경 현황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
|------------|------------|---------------|--------------------|
| 동호로5길 133 | 매봉길 49-35 | 2021.7.1. | 정문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

- 한편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 정비의 건 또한 2015년 중랑초병설유치원 신설 당시 잘못 기재(오타)된 주소를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정하려는 것인바, 교육청의 안이한 업무추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현행 조례에 잘못 기재된 주소명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정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7] 중랑초병설유치원 주소명 변경 현황

| 학교명 | 변경 전 주소 | 변경 후 주소 |
|----------------|--------------|---------------|
|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중랑구 봉우재6길 26 |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